보호종료아동(자립준비청년) 지원강화 방안

"더 나은 내일로 함께 내딛는 첫발"

2021. 7. 13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추진배경 및 경과 ····· 1

Ⅱ.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현주소 ····· 3

Ⅲ.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····· 5

Ⅳ. 비전과 추진과제 ····· 6

1.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····· 7
2.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····· 8
3.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····· 9
4.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····· 12
5.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····· 16
6.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····· 18

Ⅴ. 과제별 추진일정 ····· 20

Ⅰ. 추진배경 및 경과

□ **[현황]** 아동복지시설, 위탁가정에서 보호*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,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(年 2,500여 명)

*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, 시설에서 보호

○ '가정'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는 만큼,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

<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현황(명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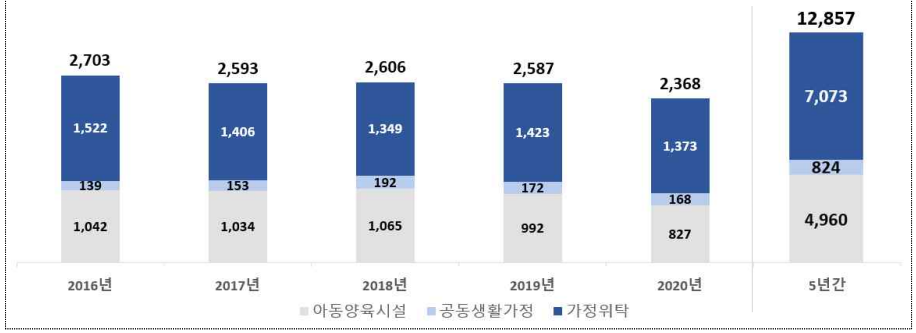

□ **[평가]** 현 정부 들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, 일반 청년 대비 자립이 어려운 상황

○ 자립수당 신설('19),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('19)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 중

* (주거안정률) ('14) 68.8% → ('20) 78.6%, (자립률) ('14) 76.1% → ('20) 81.1%

○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, 지원제도가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

- 일반 청년과 비교해 실제 자립지표 격차*도 큰 상황이며, 코로나19, 청년 취업난 등으로 보호종료 초기 자립여건은 더 악화

* (종료아동 vs 일반청년) (월임금) 182만원 < 233만원, (대학진학률) 62.8% < 70.4%

○ 언론, 국회, 인권위 등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보호종료아동 관련 법안 등이 논의되는 상황

- **(언론)** 사회 첫발 뗀 보호종료아동... "**코로나 휴직에 월 30만 원으로 버텨**"('21.1.17), "무섭고 힘든데"... 혼자 살라고 등 떠밀리는 '**열여덟 어른**'(21.1.31), "지금 독립하라고요?" **18세가 두려운 보호종료아동들**('21.3.8) 등
- **(국회계류 현황) 제21대 국회에서 자립지원 관련 입법안 다수 발의**
  - **(강선우의원)** 보호대상아동의 **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**, **자립지원전담기관** 설치·운영 및 자립정착금,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
  - **(정춘숙의원)** 보호대상아동의 **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**, **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**,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
    * 그 외 **강준현 의원**, **김예지 의원**, **윤후덕 의원** 등
- **(인권위)** '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' **권고**('21.4.7)
  - **(주요 권고내용)** ❶ 정보제공, 주거지원 확대,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, ❷ 자립역량 교육 확대, 심리·정서적 안정 환경조성, 진학·취업 지원강화 등

□ **[진행경과]**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 시작

○ (실태조사) '20년 자립실태조사를 실시하여,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 필요성 분석

* (개요) 4년 주기 표본조사, (대상) 보호종료아동, 보호종료 직전의 만 17세 등 3,836명, (내용) ①건강, ②심리·정서, ③사회적 관계, ④주거, ⑤교육, ⑥고용 및 경제, ⑦서비스 이용 등

○ (간담회)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간담회, 자립지원 종사자(주거지원사례관리사 등), 아동복지시설장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

* '보호종료아동 자립'을 주제로 38차 목요대화 개최(3.11, 국무총리)

*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간담회(2.23, 6.27), 종사자 간담회(2.26), 전문가 간담회(4.20)

○ (부처협의) 관계부처 TF 구성·운영을 통해 대책(안) 마련·협의

* '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TF' 구성(4월) 및 운영(~7월)

*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5.20)에서 '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' 관련 논의 실시

Ⅱ.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현주소 * 출처: '20년 자립실태조사 등

◈ **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**을 위한 **다양한 제도적 뒷받침**에도, 자립기반 및 자립역량, 지지체계 등 **전반에서 여전히 열악한 현실**

□ **[보호연장] 학업, 취업 준비 등**의 이유로 **보호연장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, 본인 의지와 무관히 보호가 종료되는 문제**

* 지자체나 양육시설 등에서 임의적으로 보호조치 종료를 결정하는 사례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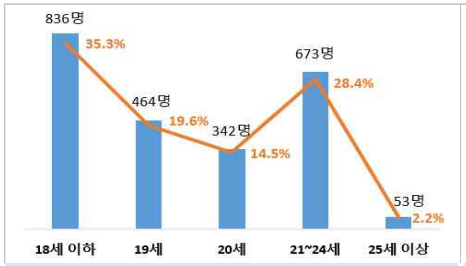

보호종료아동 연령('2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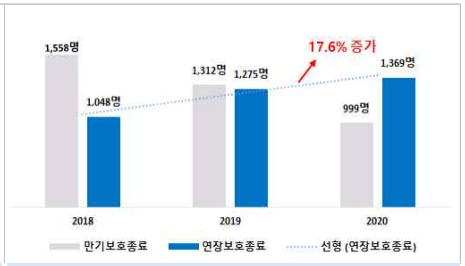

보호종료아동 만기/연장종료 현황

□ **[자립기반] 자립수당, LH 공공임대** 등을 통해 **다양한 자립기반을 지원**하고 있으나, **생계나 주거안정을 유지**하기에는 **여전히 부족**

* **(소득)**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 **36.1%**, 월소득 127만원(최저임금과 52만원 차이)
* **(부채) 24.3%**가 부채가 있고(평균 605.1만원), 주된 이유는 생활비, 주거비, 학자금 등
* **(주거)** 현재 고시원, 친구/지인 집, 숙박시설 등 임시·취약주거 거주율 **16.7%**(경험률은 20.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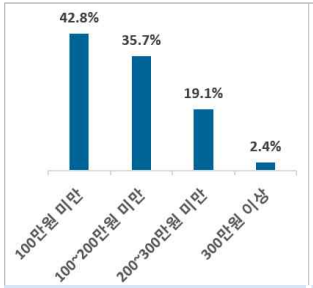

월소득(평균 127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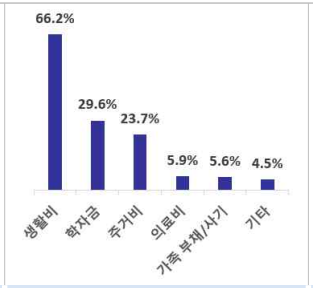

부채발생사유(중복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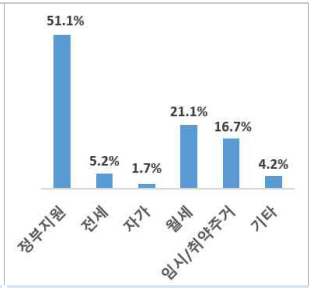

주거실태(현재 주거유형)

□ **[자립역량]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과 높은 실업률**을 보이며, 자산관리 등 **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대처도 다소 미숙**

* **(교육)** 대학진학률은 일반 청년(70.4%)보다 7.6%p 낮은 **62.8%**
* **(취업)** 실업률은 일반 청년(8.9%, '20.9월)의 2배 수준인 **16.3%**, 비정규직 비율 36.4%
* **(자립기술)** ❶주도적 결정, 경제관념, 생활기술 경험 부족 → 돈·자원 관리 등 **일상적 자립역량 미흡**, ❷**문제 발생 시 조언받을 지지기반 부족** 등으로 범죄 노출 우려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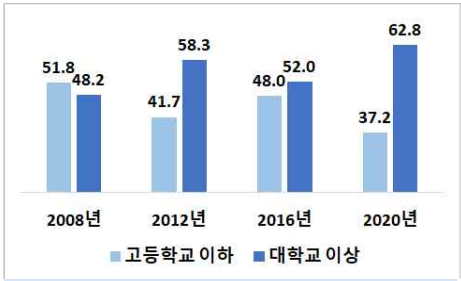

교육수준(%) : '16년 대비 **개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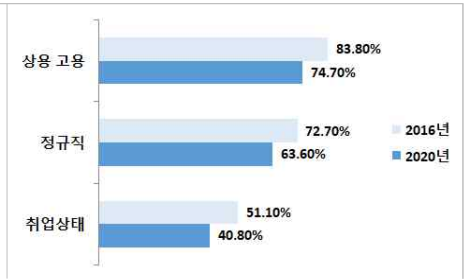

고용지표(%) : '16년 대비 **악화**

□ **[지지체계] 불안·우울, 자살 생각** 등 **심리·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**하나, **가족관계 단절** 등으로 **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도 부족**

* **(자살 생각)**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(16.3%)보다 3배 높은 **50.0%**
* **(사회적 관계)** 부모 부재 또는 생존을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, 보호자보다 친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로 보호나 조언받을 지지기반 부재 → 범죄 노출, 극단적 선택 등

삶의 만족도(11점 만점), **자살생각 경험 비교**

사회적 관계
(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)

Ⅲ.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

□ **[인식전환]** 보호종료아동은 '보호'와 '지원'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되어왔으며, **본인 판단으로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는 한계**

⇒ 보호종료아동을 **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**이자 **'자립의 주체'로 인식**하고, **이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체계**를 마련할 필요

□ **[환경변화 대응]** 청년 취업난, 주거불안 등으로 **일반 청년*도 가정에서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**이며, **실제 독립 시기도 점차 늦춰지는 추세**

* 일반 청년이 생각하는 적정 독립시기 : 평균 26.1세 ('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)

⇒ **동등한 출발기회 보장** 차원에서 **자립 준비와 동시에 보호**받을 수 있는 **여건을 조성**하기 위해 **보호기간 현실화 필요**

□ **[국가책임 강화]**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**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줄 지지체계*가 부재**한 점

* 자립정보·진로상담·조언 등을 제공하거나 심리·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관계 부족

⇒ **전 분야의 자립지원 제도 확대**와 더불어 **언제 어디서든 자립을 지원**받을 수 있도록 **전국 단위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**

□ **[자립지원 고도화]** 그간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왔으나, **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스스로 일어서는 데에 한계**

⇒ **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실질적 자립에 성공**할 수 있도록 **자립역량 강화**를 위한 **제도적 지원 필요**

⇒ **자립의 당사자인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**하고, **이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**할 수 있도록 지원

⇒ **보호종료아동의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**을 위한 **국가지원 전면 확대** 및 **'자립의 동행'**을 위한 **제도적 기반 마련**

Ⅲ. 비전과 추진과제

비전 | **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**

기본 방향

- √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**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**
- √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소득·주거·취업·심리 등 **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**
- √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기반으로 **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**

6대 주요 추진 과제

❶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
- 만24세까지 보호연장 강화
- 추가적 보호연장 요건 완화
- 미성년후견제도 보완

❷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
-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
-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

❸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
- 소득안전망 강화
- 주거안전망 강화

❹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돕겠습니다
-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대
-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
-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

❺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
- 심리정서 지원사업 확대
-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

❻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
-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
-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
- 민관 소통 및 연계 활성화

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

◈ '보호'에서 '자립'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보호기간 확보

□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강화

○ (현황)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이른 나이의 자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, 본인 의사나 자립준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가 종료되는 현실

* (사례) 대학생 보호연장을 거부하는 지자체, 만18세에 무조건 보호종료시키는 양육시설 등

⇒ (제도개선)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연장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(아동복지법 개정)

* (해외) ① (미국·영국) 만 21세까지 보호, ② (독일) 만 18세 이후 만 27세까지 보호

⇒ (제도개선) 별도거주 중인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* 도입 검토

* 대학진학, 직업훈련, 취업준비 등으로 시설 외 거주하는 보호연장아동 개인에게 급여 지급

□ 추가 보호연장 시 연장요건 완화

○ (현황) 대학 등 휴학* 시 보호가 일시중지되고, 1년이 넘는 경우 보호조치 종료 및 생계급여 등이 중지되면서 학업 중단사례 발생

* 군복무, 취업 준비 등으로 일반 대학생들은 평균 23.7개월 휴학하며, 남자는 30개월, 여자는 15.1개월 휴학('20.5월, 통계청)

⇒ (제도개선) 휴학으로 인해 보호가 종료되지 않도록 단순 휴학 기간을 1년 → 2년 이내로 확대하고, 일반 대학생 수준의 취업 준비를 위해 어학연수를 보호 일시중지 사유에서 제외('22)

□ 미성년후견제도 보완

○ (현황) 보호 중 친권자의 연락두절, 소재불명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 공백 발생 및 생활 불편 등 권익 침해*

* (사례) 긴급수술, 휴대전화 개통, 여권 발급, 계좌 개설, 의료서류 발급 등

⇒ (제도개선)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, 제한을 적극 청구하도록 개선(아동복지법 개정), 미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'공공후견인 제도*' 도입 추진

* '사실상 친권 공백상태'의 보호아동을 위한 후견인 풀(pool) 구성, 선임 및 후견활동 지원 등

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

◈ 언제 어디서든 맞춤형 자립지원 및 두터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
□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

○ (현황) 법상 임의적 설치근거 및 국고지원 부재로 역할이 모호하고, 일부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지역·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편차 발생

* 자립지원전담기관 : 전국 8개 설치(미설치 시도 9개), 1개소당 전담인력 평균 4명

⇒ (신설)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·운영지원으로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전국 통합관리* 강화('22)

* 추진체계 : (중앙) 보건복지부, 아동권리보장원 → (광역) 시도, 자립지원전담기관

□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

○ (현황) 보호체계마다 분절적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보호종료 이후까지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부실화

* ('21) 아동양육시설 247명, 공동생활가정 3명, 가정위탁 43명 배치

**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당 담당아동은 가정위탁 304명, 공동생활가정 645명

⇒ (신설)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생활, 주거, 진로·취업 등 전 분야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대폭 확충

* ('21) 일부 시·도 자체적 충원 → ('22)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

< 자립지원 대상자별 전담인력 및 역할 >

구분	보호아동 (15세~연장아동)			보호종료아동 (5년 이내)		
	담당자	소속	역할	담당자	소속	역할
아동양육시설	종사자, 시설장, 위탁부모, 상담원 등 + 자립지원 전담요원	아동양육 시설	-보호아동 자립지원 -종료 이전 전담기관·아동 관계 형성 지원 -자원연계 -전담기관과 협력 등	자립지원 전담인력	자립지원 전담기관	-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-보호아동 전담요원 지원 (자립지원계획 수립 상담, 정보제공 등)
공동생활가정 (그룹홈)		그룹홈 (지원센터)				
가정위탁		가정위탁 지원센터				

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

◈ 소득·주거 안전망 강화로 안정적 자립준비를 위한 기본생활 보장

1 소득안전망 강화

□ 자립수당 지급 확대

○ **(현황)** 보호종료 5년 이내 **기초생활수급률은 36.1%**(동 연령대 2.5%)로 자립 초기 **경제적 어려움이 크고, '19년 자립수당이 신설***되었으나 지급기간이 **법상 지원 기간**(5년)**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**

* ('19) 보호종료 2년 이내 → ('20~)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

⇒ **(확대) 자립수당 지급 기간**을 보호종료 3년에서 **최대 5년 이내로 확대**

* '21.8월부터 적용, ('21) 보호종료 3년 이내 8,035명 → ('22) 보호종료 5년 이내 9,982명

□ 아동자산형성사업(디딤씨앗통장) 지원확대

○ **(현황) 평균 447만 원을 수령**하고 있으나, 타 자산형성 사업*에 비해 **정부 지원비율이 낮아 전·월세 보증금, 입주 준비 등에는 불충분****

* 청년희망저축계좌 1:3 매칭 / ** 초기정착금 평균 947만 원(자립정착금 500, 디딤씨앗통장 평균 447) ⇒ 청년 1인 가구 전·월세 평균 보증금('17, 2,066만 원) 절반 수준

⇒ **(확대) 정부 매칭 비율을 1:1 → 1:2, 지원한도를 월 5 → 10만 원으로 확대**하여 **평균 수령액 2배 이상 상향 지급**(447 → 1,000만 원)

⇒ **(제도개선) 후원금 적정 배분 등 효율적 사업운영**을 위해 아동·계좌·후원 정보를 연계·관리할 수 있는 **통합관리 시스템*** 구축(~'22.7)

*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(아동통합정보시스템)으로 추진

□ 자립정착금 지원확대

○ **(현황)** 초기 정착비용으로 **최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**(지자체) **지역별 편차가 크고**(시도별 500~1,000만원), **사용 시 문제 발생* 우려**

* 사기·갈취 등 범죄 노출, 부모의 편취, 지출관리 기술 부족으로 인한 낭비 등

⇒ **(확대)** 지자체 협의를 통해 **지원금액 확대*** 및 부작용 방지 차원의 **사전·사후관리 병행****,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**지자체 합동평가 포함 추진**

* (모범사례) 경기, 광주 1,000만 원 지급, ('21년 권고기준)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급

** 보호종료 이전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확인 및 사용처 점검 등

□ 생계급여 제도개선

○ **(현황)**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**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**을 확대 시행* 중이나, **근로소득 특별공제**는 **만 24세까지만 적용**되는 한계

* 만 30세 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'19), 만 24세 이하 근로소득 50만원+30% 공제 등

⇒ **(제도개선)** 보호종료아동 **생계급여 소득산정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시기**를 **만 24세에서** 법상 자립지원 기간인 **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**

2 주거안전망 강화

□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마련

○ **(현황)** 보호종료 직전 **주거를 급히 마련**하면서 **열악한 거주지에 살거나, 주거 미정 상태로 보호가 종료**되는 등 **주거 불안정 경험**

⇒ **(신규) 주거독립**(보호연장·종료) **8개월 전부터 주거상담·설계 → 신청 → 입주 확정 → 즉시 입주**하는 **'단계별 주거지원 체계' 마련**

*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립준비도 점검사항에 주거 확정 여부 추가 및 주거 미확정시 보호 유지, 보호종료 전 자립수당 신청 여부 확인 등 추가

<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(안) >

주거독립 8개월 전	주거독립 5~6개월 전	주거독립 3개월 전	주거독립 시
주거상담 (수요조사, 계획설계 등)	수요별 주거유형 설정 및 주거신청	주거 확정	즉시 입주 (보호연장·종료)
자립지원전담요원	자립지원전담요원 (LH, 대리양육자 협조)	자립지원전담요원 (LH, 대리양육자 협조)	

□ **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**

○ **(현황)** '20년 보호종료된 아동의 **LH 임대주택 지원비율은 29.3%**로 **낮은 수준**이며, 별도 거주지가 필요한 **보호연장아동**은 **지원대상에 미포함**

⇒ **(확대) 전세·건설·매입임대 공급지원 확대*** 및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**주거설계 시 정보 필수 제공**

* '22년까지 2,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(3년간 전세 4.5천호+매입 1.2천호+건설 0.3천호)

⇒ **(확대) 안정적 자립 준비**를 위해 **보호연장아동에게도 LH 전세·매입·건설임대주택*** 및 **주거비 등 공공주거 지원**

* (입주대상) 퇴소예정 및 퇴소 5년 이내 무주택자 → **보호연장아동 추가**

⇒ **(제도개선)** 군복무 등 **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**한 경우 **해당 기간은 '보호종료 5년 이내'에 불산입하도록 개선**

□ **주거비 등 사례관리 지원확대**

○ **(현황) 주거 부담이 큰 보호종료아동**을 위해 **주거지원통합서비스**를 지원(월 임대료·사례관리 등)하고 있으나, **수요 대비 지원규모 부족**

* '21년 주거지원 규모는 **377명**으로 **대기자가 월평균 30명 이상**이며, **약 21.7%는 공적 지원 부재**로 **월세부담**을 겪거나 숙박시설, 고시원, 친구집 등 **주거불안 경험**

⇒ **(확대)** 신설되는 **자립지원전담기관**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**보호종료아동의 상황·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, 심리상담, 취업** 등 **맞춤형 지원 추진**

* ('21) 주거비 10개 시도, 377명 → ('22)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**17개 시도, 1,000명 이상으로 확대**

□ **수요 맞춤형 주거공급 강화**

○ **(현황) 역세권, 직장, 취업훈련 장소**에 가깝거나, **여러 명이 모여 살 수 있는 곳 등 보호종료아동의 수요에 맞는 주거공급 부족**

> **사례관리사의 이야기** "아이들이 역세권을 좋아하는 이유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.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, CCTV도 있고 하기 때문인데, … "

⇒ **(확대) 보호종료아동 2~3명이** 사례관리 하에 **함께 생활하면서 취업 준비, 일상생활, 직장유지가 가능**하도록 **면적 85㎡까지 공급**(전세임대)

⇒ **(확대)** 역세권, 대학가 등에 **신축 임대주택**을 확대하여 공급하고, **사회적 운영기관** 등과 협업하여 **서비스* 지원**(매입임대)

* 사회적 협동조합, 비영리 법인 등(예 : 청소년 행복재단)이 멘토링, 생활 의료, 일자리교육 등 지원

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

◈ **보호종료아동에게 특화된 진로탐색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**
◈ **소득으로 연결되는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**

1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대

□ **진로상담 플랫폼 연계 추진**

○ **(현황)** 보호종료 이전부터 **대입 준비나 적성·진로 고민 등이 필요**함에도, **공부를 돕거나 진로 고민을 함께 할 지원체계 부족**

* '꿈이 없거나 아직은 막연하다'는 응답 : 56.4% ('17년 일반 아동·청소년 42%)

> **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** "할머니와 고모가 과를 정해줘서 정보통신과에 갔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후회했어요.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 취업도 안 되었어요."

⇒ **(확대) 교육부 커리어넷**을 통해 **보호**(종료)**아동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* 운영 추진** 및 **자립정보ON 정보연계 활성화**

* 커리어넷 대상별 맞춤형 심화상담에 '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' 대상 심화 상담 추가 운영, 자립정보ON 앱에 커리어넷 상담 페이지 링크 연결

□ **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원**

○ **(현황)** 가정 부재 등 **진학준비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운 환경**이나, **타 사회적 배려 대상**과 비교 시 **진학 기회보장을 위한 제도 부족**

*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중 보호(종료)아동 특별전형이 있는 학교 3개

⇒ **(신규) 보호(종료)아동**에 대한 **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**될 수 있도록 **대학협의체와 협의***

* (예시) 고른기회 등 특별전형에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포함 등

□ 국가장학금 지원강화 등

○ **(현황) 학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큼**에도 타 사회적 배려 집단과 달리 **별도 지원기준***이 없고, **부양관계 단절 증명 절차**로 인한 부담** 존재

*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/성적기준 미적용,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원금액 상향 등

** 별도 소명 시 부모 동의서 제출 제외 가능하나,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 등 문제

⇒ **(확대) ❶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** 및 **부양관계 단절 증명 절차 간소화***, **❷ 근로장학금**** 우선선발 대상에 **보호종료아동** 포함하여 **안정적 학업여건 지원**

*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시 부양관계 단절 증명으로 즉시 인정됨을 필수적으로 안내 등

** 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등

□ 대학생 기숙사 지원강화

○ **(현황)** 대학진학 후에도 **생계유지와 주거불안정** 등으로 **안정적인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** 발생

> **언론보도('19.11.4)** "대학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동안 대학 도서관에서 살았으며, 빨래는 기숙사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해결했다. …."

⇒ **(제도개선)** 보호종료아동을 **행복기숙사**(연합·사립) 입사우선 대상인 **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**하고, 각 대학의 기숙사 지원강화 **협조**

* 행복기숙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'시설퇴소아동' → '보호종료아동'으로 변경

□ 시설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

○ **(현황) 시설은** 가정과 같은 **밀접한 지지가 부재해 학습 동기부여가 어렵고, 경계선지능***, ADHD 등 아동의 학습 관련 **전문적 접근에 한계**

* 보호아동 28,234명 중 15.6%(4,404명) 추정('16년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실태조사)

⇒ **(신규) '보호시기 학습역량 강화'**를 위해 지역 **학습지원센터** 등을 활용한 **시설 학습부진 아동 기초학습·상담 지원**

* (방안 예시) 아동양육시설 대상으로 '찾아가는 학습상담 및 코칭 서비스' 운영

2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

□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지원 추진

○ **(현황)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 제도 부재**

⇒ **(신규)** 국민취업지원제도 **특정계층 유형에 보호종료아동**을 포함, **보호종료아동에 특화된 취업지원 체계 마련** 및 **적극 연계**('21~)

< 보호종료아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>

① **(계획)** 국민취업상담사, 자립지원전담요원 공동 참여로 아동별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

② **(지원)** 훈련, 일경험, 창업, 해외취업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등

③ **(수당)**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,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(소득기준 충족 시)

④ **(인센티브)**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보호종료아동 채용 시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

□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

○ **(현황)** '21년 도입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**지자체 자율**(특화) **사업***으로 **보호종료아동을 일부 포함하여 지원 중**

*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역 중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인천 부평구

⇒ **(신규) 청년도전지원사업 공통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***하여 보호종료아동의 **구직활동 지원** 및 **자신감·취업 역량 강화**

* 사업지침 변경하여 현재 진행 중인 '21년 사업부터 시행 계획

□ 전문기술 훈련기회 확대

○ **(현황)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**될 수 있는 **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지원,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전문기술 훈련기회 부족**

⇒ **(신규) 마이스터고 등 특별전형 지원대상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**하여, **자립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** 확대('22)

* 직업계고(마이스터고 등) 특별전형 대상에 보호대상아동 포함하도록 시도 안내

⇒ **(제도개선)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우대 대상에 포함**하여 민간 학원 등 **교육비 부담 완화** 및 **기술·자격취득 지원강화**

□ **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**

○ **(현황) 취업의지가 낮거나,** 경계선지능아동 등 **취업 역량이 취약한** 보호종료아동의 **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체계 부재**

⇒ **(신규) ❶보호종료아동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**('21~, 연구추진), **❷**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한 **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방안 별도 연구실시**('22~)

3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

□ **시설아동 자립체험 환경조성**

○ **(현황) 시설 특성상 집단 프로그램 방식의 자립교육**으로 **일상생활 기술**이나 **직업, 진로탐색** 등 **아동별 자립역량 강화**에는 **한계**

> **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** "샴푸, 휴지 같은 작은 거 사본 적도 없고 무조건 다 갖춰져 있었으니까요. … 남들같이 해결해 본 적이 없고 주어진 대로만 했거든요."

⇒ **(신규) 보호단계**에서 **일상 속 자립생활 경험**을 위한 **자립체험 프로그램 시범사업**('21, 고교생~연장아동 80명) **운영·분석 후 확대**

< 5단계 자립생활 경험 단계(안) >

1단계 : 초등 (만12세 이하)	2단계 : 중등 (만13~15세)	3단계 : 고등 (만16세~)	4단계 : 보호연장	5단계 : 보호종료
3인실	2인실	독립 1인실, 개별자산관리 훈련(고3)	대리양육자와 주거 분리	LH 임대 5년 사후관리

* (내용) 원룸 형태 독립공간 제공, 식료품 구매, 청소, 공과금 납부 등 일상 속 역할 부여

□ **체험형 경제교육 운영 및 금융상담 연계**

○ **(현황)** 지출, 저축 등 **돈 관리 경험 부족으로 종료 이후 자립정착금,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소모하는 등의 사례 발생**

⇒ **(확대) 찾아가는 금융교육**(서민금융진흥원) 등을 통해 **체험형 경제교육 콘텐츠** 활용 교육 **집중 시행**(1,000명)

⇒ **(제도개선) 자산·부채상황**에 맞게 정책자금, 채무조정, 복지연계, 재무상담을 종합 제공하는 **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**

*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경제교육 진행 시 상담제공 정보 안내 및 온라인 정보제공

□ **자립지원 정보제공 강화**

○ **(현황)** 제도 관련 **정보를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,**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정보 부족 등 **보호체계별 정보 편차 발생***

*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자립 관련 정보부족 경험

> **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** "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모르고, 신청기한이 지나기도 하더라구요. 찾아봐도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."

⇒ **(제도개선) 공공·민간 정보 통합제공 강화** 및 **정보공유 활성화**를 위해 자립정보ON(앱) 기반의 **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추진**('22)

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

◈ **심리·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·치료 재활 및 사회적 지지관계 형성을 통해 실질적 자립을 가능하게 할 마음의 힘 함양**

□ **보호부터 종료까지 심리상담 · 치료 지원강화**

○ **(현황)** 보호(종료)아동은 **학대, 유기** 등으로 **심리·정서적 어려움***을 겪는 경우가 많고, **자립 초기 사회적 고립감, 심리적 불안** 등을 경험**

* 최근 5년간 신규 시설입소아동의 67.4%, 기존아동의 42.4%가 문제행동이 있는 것으로 추산

** 불안·우울이 높고, 자아존중감·삶의 만족도는 낮음(보호종료아동 5.3점 < 일반청소년 6.5점)

⇒ **(제도개선) 심리상담·치료채활 효과 향상**을 위한 **보호(종료)아동 심리지원 사업** 및 **상담서비스 지원 확대**('22~)

⇒ **(제도개선)** 보호아동 **심리지원사업 통합** 및 **상담·치료, 사례관리 등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**('21, 연구추진)

* (보호조치 전) 심리검사 → (보호조치 후) 상담·치료 및 사례관리 → (보호종료) 심리지원

< 보호아동 심리치료·재활사업 통합(안) >

기존		통합
시설·가정위탁·경계선지능아동 (3개)	⇨	보호아동 심리치료·재활사업 (1개)
복권기금 1개, 일반회계 2개		일반회계 1개

□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

○ **(현황)** 정신건강복지센터, 바우처 사업 등 **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**이 존재하나, **정보 부족** 등으로 **서비스 접근에 한계**

⇒ **(확대) 보호종료아동·종사자 대상**으로 **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**의 **'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' 등 제도 홍보** 및 **연계 지원**('22~)

*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, 검사,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

□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

○ **(현황) 자립멘토**(바람개비서포터즈) **모집·활동**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**자조모임 참여에 한계**('20년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2.7%)

* "소규모 자조모임은 형식적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"('18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)

> **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** "애들이랑 모여서 대화하는 거 자체만으로 되게 좋더라구요. 살아가는 방식이 제일 와닿고.. 이야기하면서 소식도 듣고 마음이 편해요.."

⇒ **(확대) 바람개비서포터즈의 권역별 지원**을 통해 **보호종료아동 연간 30여 명 → 120명** 이상으로 **자조모임 참여 확대**('22~)

* ('11~'21) 전국 1개(아동권리보장원) → ('22~) 권역별 6개(아동권리보장원+전담기관)

** 권역 예시 : 수도권, 충청권, 호남권, 경북권, 경남권, 제주

□ 범죄예방 교육 및 멘토링 지원

○ **(현황)** 종료 초기 **사회경험 부족으로 범죄에 노출**되기 쉽고, **조언**을 구할 **사회적 관계도 부족**해 사기 등 **문제해결에 어려움 경험**

⇒ **(신규) 보호종료아동이 희망** 시 **학교전담경찰관**(SPO, 전국 1,031명)**을 멘토로 지정** 및 **정기면담* 통해 범죄예방** 등 수행

* 범죄 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, 심리상담 연계, 유대관계 형성 등

⇒ **(신규)** 찾아가는 자립(금융)교육과 연계해 **'찾아가는 범죄예방' 교육** 실시 및 **보호종료 직전 취약범죄 집중교육 및 멘토링 적극 연계**

□ 보호종료아동 신체건강 지원

○ **(현황)** 질병·상해 발생 시 **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**가 많으며,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률도 **평균 31%**('19년)

> **'20년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** 64.2%는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으며, 질병 경험자가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'치료비가 없어서'가 37.7%

⇒ **(제도개선)** 보호종료아동의 **의료이용 관련 실태분석*을 거쳐 의료공백 방지**를 위한 **지원방안 검토**('21~)

* 의료급여 수급 및 건강보험료 부과, 체납 현황, 기준 중위소득별 지원규모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지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검토

6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

◈ **자립지원 분야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내실화**

□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

○ **(현황)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·운영이 임의규정**으로 되어 있는 등 자립지원 업무의 **근거 미비**로 **지역·보호체계별 편차 발생**

⇒ **(신설)「아동복지법」정비**를 통한 **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**('21~)

* ①보호연장 규정 추가, ②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·운영, ③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및 자격기준 개선, ④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직무 명확화, 보수교육 등

□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

○ **(현황)** 각종 제도 이용 시 **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한 증명이 필요**하나, 보호종료 결정 주체인 **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발급**

*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발급기관이 멀거나, 시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발급 포기 사례

⇒ **(제도개선)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기관**을 **민간**(시설·가정위탁지원센터)에서 **지자체**(시군구·읍면동)로 **일원화** 및 **온라인 발급**(정부24, 복지로 등) **추진**

□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

○ **(현황)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**에게 **아동 명칭이 부적절**하다는 지적

* 국회, 언론, 전문가 등 아동, 청소년, 청년 등의 용어를 혼용

⇒ **(제도개선) '청년'** 용어 사용 및 '보호', '지원'이라는 **수동적 의미 대신 능동적 의미**를 사용한 **'(가칭)자립준비청년' 등**으로 변경('21~)

* (대안) ① 보호청년 ② 보호종료청년 ③ 자립지원청년 ④ 홀로서기청년 등

□ 민관 소통 및 연계 활성화

○ **(현황) 민간·지자체**에서 다양한 **자립지원 사업을 운영* 중**이나, **사업별 산발적 수행**으로 **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전달 부족**

* 자립통합지원센터, 현대차정몽구재단(청년사회진출), 포스코1%나눔재단(두드림) 등

⇒ **(제도개선) 민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**(아동권리보장원 중심)하고, **민간단체에서 실시** 중인 멘토링·캠페인·자립지원 사업이 **사회적으로 확산**될 수 있도록 **협력 강화**

* (예시) ①자립정보ON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, ②자립지원 협의체를 통한 자원 관리체계 개선, ③중앙·광역기관의 자원연계·정보전달 확대, ④민간 멘토링 사업 연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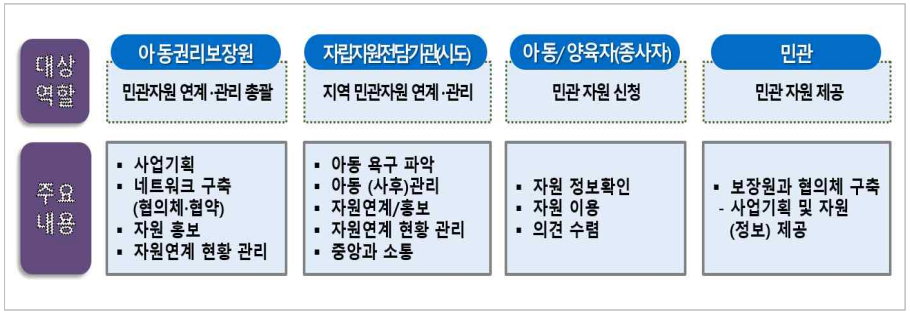

Ⅴ. 과제별 추진일정

☞ **세부 실행계획 마련** 및 **대책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**(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)

중점 추진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1.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		
❶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강화	-	-
- 보호연장 법적 근거 마련	'22.상	복지부
- 별도거주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	'22.하	복지부
❷ 추가 보호연장 시 연장요건 완화	'21.하	복지부
❸ 미성년후견제도 보완	'22.상	복지부
2.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		
❶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	'22.상	복지부
❷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	'22.상	복지부
3.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		
1 소득안전망 강화		
❶ 자립수당 지급 확대	'21.하	복지부
❷ 아동자산형성사업(디딤씨앗통장) 지원확대	-	-
- 정부 매칭비율 및 지원한도 상향	'22.상	복지부
-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	'22.하	복지부
❸ 자립정착금 지원확대	'22.상	복지부·행안부
❹ 생계급여 제도개선	'22.상	복지부
2 주거안전망 강화		
❶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마련	'22.상	복지부·국토부
❷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	-	-
- 공공임대 공급지원 확대	'22.상	국토부·복지부
-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	'21.하	국토부
- 군복무 기간 불산입 등 제도개선	'21.하	국토부
❸ 주거비 등 사례관리 지원확대	'22.상	복지부
❹ 수요 맞춤형 주거공급 강화	-	-
- 2~3인 거주 면적 85㎡까지 공급(전세임대)	'21.하	국토부
- 역세권, 대학가 등 신축 임대주택 공급(매입임대)	'21.하	국토부

중점 추진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4.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		
1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대		
❶ 진로상담 플랫폼 연계 추진	'22.상	교육부·복지부
❷ 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원	'22.상	교육부
❸ 국가장학금 지원강화	'22.상	교육부
❹ 대학생 기숙사 지원강화	'21.하	교육부
❺ 시설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	'22.상	교육부
2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		
❶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지원 추진	'21.하	고용부
❷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포함	'21.하	고용부
❸ 전문기술 훈련기회 확대	-	-
- 마이스터고 등 특별전형 지원대상 포함	'22.상	교육부
-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우대 대상 포함	'21.하	고용부
❹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	'22.상	복지부
3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		
❶ 시설아동 자립체험 환경조성	'21.하	복지부
❷ 체험형 경제교육 운영 및 금융상담 연계	-	-
-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체험형 경제교육 집중 시행	'21.하	금융위·복지부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	'21.하	금융위
❸ 자립지원 정보제공 강화	'22.상	복지부
5.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		
❶ 심리상담·치료 지원강화	-	-
- 심리지원 사업 및 상담서비스 지원 확대	'22.상	복지부
-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	'21.하	복지부
❷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	'22.상	복지부
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	'22.상	복지부
❹ 범죄예방 교육 및 멘토링 지원	-	-
-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지원	'21.하	경찰청
-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등 취약범죄 집중교육	'21.하	경찰청
❺ 보호종료아동 신체건강 지원방안 검토	'22.하	복지부
6.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		
❶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	'22.상	복지부
❷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	'22.하	복지부·행안부
❸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	'21.하	복지부
❹ 민관 소통 및 연계 활성화	'22.상	복지부

참 고 기존과 달라지는 점

추진과제		현행	개선안
1.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			
보호 연장	연령	▪ **만 18세**+a ▪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**시설급여** 지급	▪ **만 24세**+a ▪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**개별급여** 도입 검토
	사유	▪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▪ 단순 휴학 1년 이내 허용	▪ 삭제 ▪ 단순 휴학 2년 이내 허용
미성년후견제도		▪ 미성년후견제도 비활성화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	▪ 지자체의 친권상실, 제한 청구 사유 개선 ▪ **공공후견인 제도** 도입 추진
2.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			
전달 체계	기관	▪ 8개 시도 지자체 자체 운영	▪ 자립지원전담기관 **전국 17개 시도 운영**
	인력	▪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 형식화	▪ 자립지원 전담인력 **전국 120명 배치**
3.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			
경제 안전망	자립수당	▪ 보호종료 **3년 이내** 지급	▪ 보호종료 **5년 이내**로 지급 확대
	아동 자산형성	▪ 정부 매칭비율 **1:1** ▪ 정부 지원한도 **월 5만원**	▪ 정부 매칭비율 **1:2** ▪ 정부 지원한도 **월 10만원**
	자립 정착금	▪ 1인당 **최소 500만원**	▪ **지원금액 상향** ▪ 지자체 합동평가 포함
	생계급여	▪ 소득공제 시기 **만 24세**	▪ **보호종료 5년**까지 변경
주거 안전망	지원대상	▪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	▪ **보호연장아동** 추가
	주거비 등 사례관리	▪ **10개 시도**, **377명** 지원	▪ **17개 시도**, **1,000명 이상**으로 확대
	주택유형	▪ 원룸형 주택	▪ **중형주택** 추가(전세임대) ▪ **역세권 등** 공급확대(매입임대)
4.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			
진로 · 진학	진로상담	-	▪ 커리어넷 보호(종료)아동 **특화상담 창구** 마련
	대학	▪ 8개 국공립전문 대학진학 지원	▪ **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한 대학협의체 협의**
	장학금	▪ 일반 대학생 국가장학금 기준과 동일	▪ **국가장학금 Ⅱ유형** 지원강화 ▪ **근로장학금** 우선선발 대상 포함

	기숙사	▪ 행복기숙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만 입사우선 대상 ▪ 대학별 기숙사 배정 우대 편차	▪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기준을 **보호종료아동 전체로 개선** ▪ 각 대학 **기숙사 지원강화 협조**
	기초학습	-	▪ 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한 **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**
고용 · 훈련	국민취업 지원제도	-	▪ 보호종료아동 **특화 취업지원** 제도 마련
	청년도전 지원사업	-	▪ 보호종료아동 **특화 취업지원** 제도 마련
	직업훈련	-	▪ **마이스터고 특별전형** 포함 ▪ 국민내일배움카드 **지원우대**
자립 역량	자립체험	▪ 집단 프로그램 방식	▪ 일상 속 자립체험프로그램 **시범사업 운영** 및 확대
	경제교육	-	▪ **서민금융진흥원** 협업 교육 ▪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**상담 연계 강화**
	정보제공	▪ 통합적 정보제공 부족	▪ 자립정보ON 기능개선으로 **정보 통합제공 창구** 마련
5.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			
심리 정서	상담·지료	▪ 수요 대비 지원규모 부족 ▪ 보호유형별 지원사업 분산	▪ 보호~종료 **심리지원 사업 확대** ▪ 심리지원 **체계화 방안** 마련
	자원연계	-	▪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
사회적 지지체계	바람개비 서포터즈	▪ 바람개비서포터즈 **연간 30여 명**	▪ 권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으로 **참여인원 확대**
	멘토링	-	▪ 학교전담경찰관 **멘토 지원** 및 **범죄예방 교육** 지원
신체건강		-	▪ 의료이용 실태분석 기반으로 **의료 지원방안 검토**
6. 제도기반도 다지겠습니다			
법령 정비		▪ 자립지원전담기관 법적 근거 등 자립지원 법령 미비	▪ 자립지원 관련 **규정 구체화**
보호종료확인서		▪ 민간에서 발급	▪ **지자체로 발급주체 일원화** ▪ 온라인 발급 추진
보호종료아동 명칭		▪ '보호종료아동'	▪ 일반국민, 당사자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추진
민관 소통		▪ 소통체계 부재	▪ 아동권리보장원 중심 **민관 소통·자원연계 강화**